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10. 13 선고 2021가단63924 판결 [사해행위 취소에 의한 가액반환]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C

피 고 D

변 론 종 결 2021. 9. 8.

판 결 선 고 2021. 10. 13.

주 문

1. 피고와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0. 11. 2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E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 2020. 11. 26. 접수 제6197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9. 3.경 E에게 3,000만 원을 대출하였는데, 2020. 11. 17.경 연체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고, 2021. 1. 28.을 기준으로 계산한 원리금 등 합계 27,309,863원을 변제받지 못한 사실, E는 어머니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1/2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위 연체 직후인 2020. 11. 26.경 피고에게 자신의 1/2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당시 E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증여는 공동담보 부족을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이고, E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므로,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자신의 채권 보전을 위하여 위 증여의 취소를 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피고는 E에게 위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실질적으로 피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장자인 E에게 지분을 더 주기 위해 공유등기를 하였다가, 위 부동산을 담보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다시 명의를 회복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 증여는 사해행위가 아니고 피고는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증여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피고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권

별지

1)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양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다.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